

— 구미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 —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01년 12월 20일

나. 제 안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01년 12월 20일

라. 상정일자 : 2001년 12월 22일

제66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체육시설관리소장 배 삼 규

나. 제안이유

- 『구미체육관』의 명칭을 『박정희체육관』으로 변경, 새마을운동의 세계화 발판과 구미공동체의 정신적 토대를 형성
- 부속시설사용료 납부 방법을 명확히 하되 시설물의 폐기물 처리 규정을 신설하고 관람권 전산발매로 효율적 매표관리.

다. 주요내용

- 구미체육관 ⇒ **박정희체육관**으로 변경(제2조)
- 사용허가 대상을 4가지로 구분(제5조)
- 각종 행사시 “입장제한” 규정 신설(제7조)
- 상행위, 업체홍보를 위장한 강매를 근절키 위해 사용제한 규정 추가(제8조)
- 중계방송, 상행위사용, 부속시설 사용료 납부방법 현실화(제10조)
- “사용료 감면” 규정중 부속시설 사용료 감면제외(제13조)
- 시설물 사용후 폐기물처리 담보조항 추가(제18조)
- 관람권 전산발매로 매표관리 효율화(제22조)

라. 참고사항

- 창원시시민생활체육관운영에관한조례외 2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임 경 도

- 구미체육관을 박정희체육관으로 명칭변경을 하고 그동안 운영해 온 운영조례중 불합리한 규정을 보완하되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임.
- 각종 체육경기 및 행사시 입장제한(거절, 퇴장) 규정(제7조)과 사용자의 무리한 부대설비를 제한키 위한 규정(제17조)을 신설하고
- 상행위, 업체홍보를 위장한 행위에 대한 사용제한(제8조) 시설물 사용시 폐기물 처리에 대한 사용자 의무를 담보하는 조항(제18조) 등을 추가하였으며
- (별표3)에 대한 상행위 사용료 부과시 선전 또는 부착광고물에 대한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수정안 가결